

#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6. (공영애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6. 15. 원안가결)

## 2. 제안요지설명 (공영애 의원)

### 가. 제안사유

- 1)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 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내용

- 1) 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2) 청년어업인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6조).
- 3) 청년어업인의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 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함(안 제7조).
- 4)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에 대해 정의함(안 제8조).
- 5)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화성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 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어업인 기본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 지원사업의 범주, 신청방법, 협력체계 구축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

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업 진출 촉진으로 어업의 경쟁력 높이고 어업·어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6. (위영란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6. 15. 원안가결)

## 2. 제안요지설명 (위영란 의원)

### 가. 제안사유

1)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2)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3) 동물보호 및 감독에 대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4)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5) 반려 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6)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 및 감독에 대한 사업 추진, 길고양이 관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

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와 동물권 신장에 발맞춰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6. 15. 원안가결)

## 2. 제안요지설명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 가. 제안사유

- 1) 화성시 지역화폐를 통칭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과 동시에 기타 관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수정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1)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조례명 변경
- 2) 지역화폐의 자금 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3)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조)
- 4) 기타 조례 명칭 변경 및 관계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조문 수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화폐를 통칭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수정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 지역화폐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기타 조례 명칭 변경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

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로 통칭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시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나,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